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27

발의연월일: 2023. 2. 27.

발 의 자:최춘식·김상훈·하영제

김희곤 • 박대수 • 구자근

안병길 · 양금희 · 배준영

강기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78 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익직불제 등 140여 개 농업 관련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여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노후화로 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 데이터분석을 함에 있어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연계· 통합·분석·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농업 정책 및 이용자의 수 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제52조의2제1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
 - 2. 제6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업 정책자금 운영·지원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정보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 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 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정보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정보
-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정보
-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 5.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따른 농업경영정보 2. 제6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업정책자금 운영·지원에 관한정보지금 운영·지원에 관한정보 기본체가 운영하는 농업정책자금 운영·지원에 관한정보 기본체가 운영하는 농업정책자금 운영·지원에 관한정보 기본체가 용명하는 농업정책자금 운영·지원에 관한정보 기본제가 용명하는 농업정책자금 운영·지원에 관한정보 기본제가 용명하는 농업정책자금 운영·지원에 관한정보 기본제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정으로 정하는 정보 기본에 등의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정관은 관계 기관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 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 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 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 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
 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정
 보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정보
-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정보

-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 5.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사항에 관한 정 보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업 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가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